

2022년도 제1차 이사회

■ 일 시 : 2022. 3. 29(화) 14:00

■ 장 소 :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 사무실

■ 안 건 :

【제1호 의안 : 이사 연임건(재취임)(안) 심의】

【제2호 의안 : 2021년도 법인회계결산(안) 심의】

【제3호 의안 : 2021년도 시설회계결산(안) 심의】

【제4호 의안 : 법인정관변경(안) 심의】

회 순

1. 성원보고 및 개회
2. 이사장인사
3. 감사보고
4. 부의안심의
5. 기타토의
6. 폐회

2022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1. 소집통보일: 2022. 3. 22.

2. 일 시: 2022. 3. 29. 14:00

3. 장 소: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 사무실

4. 참석자: 총 6 명

대표이사: 정 ○ 조

이 사: 조 ○ 희, 김 ○ 순, 유 ○ 아, 남 ○ 국

감 사: 김 ○ ○

5. 회의내용

1)성원보고

◎간사(사무국장 정 ○ ○): 총 이사 7명 중 참석이사 5명, 감사 2명 중 참석감사 1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2)개회

◎정 ○ ○이사장: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의 2022년도 제1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3)이사장인사

◎정 ○ ○이사장: 이사 연임건(재취임)(안) 심의, 2021년도 법인회계결산(안) 심의, 2021년도 시설회계결산(안) 심의, 법인정관변경(안) 심의로 인해 이사회를 소집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다.

6. 감사보고

- ◎정 ○ 이사장 : 2021년도 법인 및 시설에 대한 회계 및 업무감사를 김진수 감사님에게 보고 요청하다.
- ◎김 ○ 감사: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로 종결된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 업무집행내용과 결산서 내용이 정확하였고, 적정하게 처리되었음을 보고하다.
- ◎정 ○ 이사장 : 감사보고에 대한 질문과 가부를 묻다.
- ◎조 ○ 이사: 원안에 동의하다.
- ◎남 ○ 이사: 동의에 재청하다.
- ◎유 ○ 학 이사: 동의에 재청하다.
- ◎정 ○ 이사장: 감사보고 통과를 선포하다.

7. 부의 안 심의

【제1호 의안 : 이사 연임건(재취임)(안) 심의】

- ◎정 ● 조 이사장 : 법인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임기만료 되신 김성순이사님의 재취임을 요청하다.
- ◎조 ● 회 이사 : 원안에 동의하다.
- ◎유 ● 학 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 ◎정 ● 조 이사장 : 재취임을 승낙하신 이사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제1호 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제2호 의안 :2021년도 법인회계결산(안) 심의】

◎정 ○ 이사장 : 제2호 의안으로 “2021년도 법인결산(안)”을 상정한다. 회의자료 제2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청하고, 제2호 의안의 2021년도 법인회계결산총괄표를 중심으로 설명하다. 세입예산액 100,870,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99,519,231원으로 예산대비 98%, 세출예산액은 100,870,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2,345,070원으로 예산대비 32%달성함을 설명하다. 건축지정후원금 9,900,000원, 비지정일반후원금 28,270,000원, 이월금 61,296,243원, 잡수입 52,988원의 수입이 있었고, 법인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무비 6,989,570원, 재산조성비 2,355,500원, 시설전출금 23,000,000원으로 시설운영비로 지출되었음을 설명하다.

〈〈2021년 결산총괄표(법인회계)〉〉

(단위:원)

연 번	세 입					세 출				
	관	항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관	항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1	후원금 수입	지정	10,000,000	9,900,000	100,000	사무비	업무 추진비 (회의비)	400,000	239,000	161,000
		비지정	29,500,000	28,270,000	1,230,000		운영비	10,920,000	6,750,570	4,169,430
2	이월금	이월금	61,300,000	61,296,243	3,757	재 산 조성비	시설비	4,000,000	2,355,500	1,644,500
							시설장비 유지비	50,000,000		50,000,000
3	잡수입	잡수입	70,000	52,988	17,012	전출금	전출금	35,550,000	23,000,000	12,550,000
세입 합계			100,870,000	99,519,231	1,350,769	세출합계		100,870,000	32,345,070	68,524,930

- ◎정 ○ 이사장: 법인회계 결산관련 의견을 요청하다.
- ◎김 ○ 이사: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다.
- ◎남 ○ 이사 외 전원: 동의에 재청하다.
- ◎정 ○ 이사장: 제2호 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제3호 의안 :2021년도 시설회계결산(안) 심의】

◎정 조 이사장 : 제3호 의안으로 “2021년도 시설결산(안)”을 상정하다. 회의자료 제3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청하고, 제3호 의안의 2021년도 시설회계결산총괄표를 중심으로 설명하다. 세입면에서 세입예산액은 1,006,567,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979,630,243원으로 예산대비 97%, 세출면에서 세출예산액 1,006,567,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52,661,343원으로 예산 대비 94% 달성함을 설명하다. 상세내역으로 입소비용수입 5,391,600원, 보조금수입 885,372,200원, 지정후원금수입 24,023,350원, 비지정후원금수입 10,530,000원, 전입금 23,000,000원, 이월금 19,165,872원 불용품매각대 10,000원, 기타예금이자수입 43,691원, 기타잡수입(직원식비)로 12,093,530원의 수입이 있었고, 인건비는 692,685,110원, 기타후생 경비 1,584,700원, 회의비 141,000원, 운영비 62,784,303원, 자산취득비로 14,596,96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3,685,890원, 사업비 중 운영비로 152,977,730원, 사업비 중 사업비로 14,205,650원으로 지출되었음을 설명하다. 또한 2021년 11월 24일 사랑의집 재물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법인건물 4건과 법인비품 2건, 시설비품 387건 재물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고하다.

《〈2021년 결산총괄표(시설회계)〉》

(단위:원)

연 번	세입					세출					
	관	항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관	항	예산액	결산액	증감액	
1	입소자부담금수입	입소비용수입	5,392,000	5,391,600	400	사무비	인건비	694,511,000	692,685,110	1,825,890	
		국고	626,400,000	617,945,110	8,454,890		기타후생경비	4,920,000	1,584,700	3,335,300	
2	보조금수입	시도	246,633,000	245,846,450	786,550		회의비	800,000	141,000	659,000	
		시군구	21,630,000	21,580,640	49,360		운영비	81,460,000	62,784,303	18,675,697	
3	후원금	지정	24,333,000	24,023,350	309,650						자산취득비
		비지정	14,000,000	10,530,000	3,470,000		시설장비유지비	22,360,000	13,685,890	8,674,110	
4	전입금	전입금	35,550,000	23,000,000	12,550,000	재산조성비	168,239,000	152,977,730	15,261,270		
5	이월금	이월금	19,169,000	19,165,872	3,128	사업비	사업비	17,957,000	14,205,650	3,751,350	
6	잡수입	잡수입	13,460,000	12,147,221	1,312,779		잡지출	100,000		100,000	
						예비비	220,000		220,000		
세입 합계			1,006,567,000	979,630,243	26,936,757	세출 합계			1,006,567,000	952,661,343	53,905,657

- ◎정 조 이사장: 시설회계 결산관련 의견을 요청하다.
- ◎조 회 이사: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다.
- ◎남 국 이사: 동의에 재청하다.
- ◎유 작 이사: 동의에 재청하다.
- ◎정 조 이사장: 제3호 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제4호 의안 : 법인정관변경(안) 심의】

◎정 조 이사장 : 제4호 의안으로 “법인정관변경(안)”을 상정하다. 회의자료 제4호 의안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청하고, 법인정관변경(안)에 대해 설명하다.

법인정관변경(안)		
관련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관리)	②이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하고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을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하고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을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의 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제3장 임원 제16조 (임원의 선임)	②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변경) ③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신설)
제3장 임원 제17조 (임원선임의 제한)	이 법인은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임원의 수는 임원 정수의 1/3 이상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①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변경)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변경)
제4장 이사회 제28조 (이사회 회의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변경) 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임원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변경) ③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며, 법인사무실에도 비치하여야 한다.(변경)

<p>제7장 공고방법 제33조(공고방법)</p>	<p>①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법인의 게시판이나 일간 신문에 실는다.</p>	<p>①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관 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법인 홈페 이지 등에 게시한다.(변경) ③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 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신 설)</p>
--------------------------------	--	--

- ◎김 ○ 조 이사장: 법인정관변경(안) 의견을 요청하다.
- ◎김 ○ 순 이사: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다.
- ◎유 ○ 학 이사: 동의에 재청하다.
- ◎조 ○ 희 이사: 동의에 재청하다.
- ◎남 ○ 국 이사: 재청하다.
- ◎정 ○ 조 이사장: 제4호 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8. 기타토의

- ◎정 조 이사장: 기타 논의사항이 없는지 확인 후, 2022년 제1차 이사회 폐회에 대한 의견을 묻다.
- ◎유 학 이사: 폐회에 동의하다.
- ◎김 순 이사: 재청하다.
- ◎정 조 이사장: 폐회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음을 말하고,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다.
- ◎정 조 이사장: 2022년도 제1차 이사회 비대면회의에 참가해주신 이사님들께 다시한번 감사하다고 말하고, 2022년도 제1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2022. 3. 29.